

## 계약학과 운영위원회 규정

제정 2009. 11. 10.

제5차 개정 2022. 04. 20.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학칙 제22장에 명시된 계약학과의 설치·운영을 위한 제반사항을 심의하는 계약학과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 (개정 2019.09.26)

**제2조(기능)**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건의한다.

1. 계약학과의 명칭, 학위의 종류 및 입학정원에 관한 사항
2. 계약학과의 학생선발에 관한 사항
3. 계약학과의 교육과정편성에 관한 사항
4. 계약학과의 설치운영기간에 관한 사항
5. 계약학과의 운영경비 및 등록금에 관한 사항
6. 계약학과 교육장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
7. 계약학과 학생의 학적변동에 관한 사항
8. 그 밖에 계약학과 운영에 관한 사항 (개정 2019.09.26)

**제3조(구성 및 임기)** ① 위원회는 계약학과 소속 단과대학장, **교무연구처장**, **기획처장**, 산학협력단장, 해당 학과장, 협력기관 관계자, 학생위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, 해당 단과대학장이 추천하는 교원을 포함하여 9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계약학과 소속 단과대학장으로 한다. (개정 2016.06.17., 2018.05.03., 2019.06.25., 2019.09.26., **2022.04.20**)

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.

**제4조(회의)**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 (개정 2019.09.26)

② 위원장은 제2조 각호의 사항에 관한 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한다. (개정 2019.09.26)

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(개정 2019.09.26)

**제5조(간사)** 위원회는 계약학과 소속 단과대학 교학지원팀이 주관하며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. (개정 2019.06.25., 2019.09.26)

**제6조(자료제출의무)** ①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 부서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 (개정 2019.09.26)

②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각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.

**제7조(실무소위원회)** ① 계약학과의 개설 및 교육과정편성과 관련하여 실무소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.

② 실무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한다.

**제8조(운영세칙)**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한다. (개정 2019.09.26)

**부칙** (기획예산부-1335, 2009.11.12)

이 규정은 2009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칙** (기획예산부-489, 2016.06.17)

이 규정은 2016년 06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칙** (기획예산부-243, 2018.05.03)

이 규정은 2018년 05월 03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칙** (기획예산팀-330, 2019.06.25)

이 규정은 2019년 06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칙** (기획예산팀-495, 2019.09.26)

이 규정은 2019년 09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칙** (기획예산팀-257, 2022.04.20.)

이 규정은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.